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安	
번 호	

제안년월일 : 2009. 12. 2.

제 안 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“ 의견의 상충 · 대립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 의결한다.” 를 “ 의견의 상충 ·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다.”로 함 (안 제6조 제3항)

나. “ 관계공무원 등 참석시켜 ”를 “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”로 함 (안 제6조 제4항)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3항 중 “의견의 상충·대립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 의결한다.”를 “의견의 상충·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다.”로 하고, 같은조 제4항 중 “관계공무원 등 참석시켜”를 “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